



제27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년 1월 23일 (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1. 15 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 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850,000원에서 월 2,180,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조례안은

- 충청북도 교육위원의 2009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150만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2,616만원(월 218만원)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008년 월정수당 : 2,220만원(월 185만원)

- 결정된 의정비 4,416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2,616만원)은 전년대비 396만원(9.85% 인상, '08년 4,020만원) 증액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기준액 보다 5.7%('09년 기준액 4,683만원) 적은 금액으로 타 시·도 교육위원의정비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별첨 : 시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

<별첨>

시·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

(단위 : 만원)

시·도	결정 기일	'09년 기준액	'08 의정비		'09 의정비		'08대비 (%)	기준액 대 비	결정 사항
충북		4,683	의 정 비	4,020	의 정 비	4,416	9.85%	-267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883	월 정수당	2,220	월 정수당	2,616			
서울		5,475	의 정 비	5,040	의 정 비	5,040	0.0%	-435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675	월 정수당	3,240	월 정수당	3,240			
부산		5,216	의 정 비	4,448	의 정 비	4,448	0.0%	-768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416	월 정수당	2,648	월 정수당	2,648			
대구	11. 28. 17:00	5,191	의 정 비	4,344	의 정 비	4,344	0.0%	-847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391	월 정수당	2,544	월 정수당	2,544			
인천	11. 25.	5,373	의 정 비	4,678	의 정 비	4,678	0.0%	-695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573	월 정수당	2,878	월 정수당	2,878			
광주	11. 28. 14:30	5,016	의 정 비	3,864	의 정 비	4,373	13.2%	-643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216	월 정수당	2,064	월 정수당	2,573			
대전	11. 28. 16:00	5,197	의 정 비	4,200	의 정 비	4,704	12.0%	-493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397	월 정수당	2,400	월 정수당	2,904			
울산	11. 27.	5,058	의 정 비	4,730	의 정 비	4,730	0.0%	-328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258	월 정수당	2,930	월 정수당	2,930			

시·도	결정 기일	'09년 기준액	'08 의정비		'09 의정비		'08대비 (%)	기준액 대 비	결정 사항
			의 정 비		의 정 비				
경기		5,469	의 정 비	5,421	의 정 비	5,421	0.0%	-48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669	월 정 수 당	3,621	월 정 수 당	3,621			
강원		4,565	의 정 비	4,000	의 정 비	4,000	0.0%	-565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765	월 정 수 당	2,200	월 정 수 당	2,200			
충남	12.30. 결정 공포	4,862	의 정 비	4,003	의 정 비	4,434	10.7%	-428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062	월 정 수 당	2,203	월 정 수 당	2,634			
전북	11. 28. 11:00	4,582	의 정 비	4,002	의 정 비	4,002	0.0%	-580	동 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782	월 정 수 당	2,202	월 정 수 당	2,202			
전남	12. 17. 2차회의	4,442	의 정 비	3,903	의 정 비	3,903	0.0%	-539	동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642	월 정 수 당	2,103	월 정 수 당	2,103			
경북		4,633	의 정 비	4,095	의 정 비	4,095	0.0%	-538	동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833	월 정 수 당	2,295	월 정 수 당	2,295			
경남	12. 08.	4,913	의 정 비	4,351	의 정 비	4,351	0.0%	-562	동결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3,113	월 정 수 당	2,551	월 정 수 당	2,551			
제주	12. 07.	4,311	의 정 비	4,512	의 정 비	4,788	6.1%	477	
		1,800	의정활동비	1,800	의정활동비	1,800			
		2,511	월 정 수 당	2,712	월 정 수 당	2,98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850,000원” 을 “월 2,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월 2,180,000원...</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위원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의 장 부위원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비교 : 1. (생략) 2. (생략) 3. (신설)								비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 ·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회 회의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 · 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금액 범위
- 월정수당 : 월 218만원(연 2,616만원)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 지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